



	보 도 자 료						IN NEW YORK OF THE PROPERTY OF
금융위원회	보도	2016.10.	27.(목) 석간		배포	2016.10.26(수)	장용감독원.기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 박 주 영 (02-2100-2630)				담 당 자	금융소비자과 사무관 최 지 은 (02-2100-2632)	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구 경 모 (02-3145-8020)			5		은행제도팀장 김 용 태 (02-3145-8030)	
	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윤 성 은 (02-3705-5704)						E부 계장 2-3705-5423)

# 제목: 10.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- 10.28일 시행은행 : 총 5개 은행
  - 우리은행, 하나은행, 한국씨티은행, 대구은행, 제주은행
- 10.31일 시행은행 : 총 10개 은행
  -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국민은행, 수협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
- 11.28일 시행은행 :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

# 1. 추진 배경 및 경과

- □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'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'(이하, '대출계약 철회권')의 도입을 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\*을 발표('16.6.14.)
  - \*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등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시 금융회사·신용정보원·CB사 등의 대출정보 삭제

- □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\* 개정안을 심사 청구(6.30.)하였으며
  -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
    10.28일,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10.31일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
    11.28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

# 2.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

- □ (적용대상) 개인 대출자
- □ (적용상품)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된 일정 규모\* 이하 은행 대출 상품
  - \*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
- □ (행사절차) 대출계약 후 14일(calendar day)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

#### ① 철회 가능기간

-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\*부터 14일 (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)
  - \* 은행권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 실행일이 기준일

#### ※ 철회 가능 기간 예시 i) 기간의 **마지막 날**이 **평일**인 경우 **14일차까지** 철회가능 2016.10.28.(금) 10.29.(토) 11.11.(금) 계약서 발급일 1일차 14일차 대출 실행일 ii) 기간의 **마지막 날이 휴일**인 경우 **다음 영업일까지** 철회가능 2017.1.13.(금) 1.16.(월) 1.17.(화) 1.30.(월) → 1.31.(화) 14일차 → 15일차 계약서 발급일 대출 실행일 1일차 (휴일) (영업일)

#### ② 철회 의사표시

-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, 콜센터,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\*
  - \* 우편, 콜센터,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,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

#### ③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

-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\* 상환
  - \* 인지세, 근저당권 설정비용, 감정평가 수수료, 임대차조사 수수료
- □ (행사효과)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은행·한국신용정보원·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
- □ (남용방지)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
  - 해당 은행 대상 '2회/년', 전체 금융회사<sup>\*</sup> 대상 '1회/개월'
    - \* 타은행 및 2금융권(보험, 여전, 저축은행, 상호금융)과 대부업권(상위20개사)

# ※ 행사횟수 제한 예시

- '16.11.1일 A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
- ① A은행에서는 1년간('16.11.1.~'17.11.1.) 추가 1회만 철회권 행사 가능
- ② 1달간('16.11.1.~'16.12.1.)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 불가

# 3. 기대효과

- ☐ (금융소비자)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·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,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 절감
- □ (금융회사)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(금리, 수수료 등) 및 소비자 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

#### < 참고 :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(예시) >

#### <신용대출>

■ 4,000만원 신용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(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.8% 가정)

기존(중도상환)	개선(대출철회)	소비자부담 감소		
원리금 + 약 31만원*	원리금	약 31만원		

<sup>\*</sup> 중도상환수수료(중도상환금액×수수료율×대출잔여기간/대출기간)

#### <담보대출>

■ 2억원 담보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(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.5% 가정)

기존(중도상환)	개선(대출철회)	소비자부담 감소	
원리금 + 약 300만원*	원리금 + 약 150만원**	약 150만원	

<sup>\*</sup> 중도상환수수료(중도상환금액×수수료율×대출잔여기간/대출기간) \*\*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

# 4. 시행일정

- □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서 10.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제도 시행
  - 10.28일 시행은행 : 총 5개 은행
    - 우리은행, 하나은행, 한국씨티은행, 대구은행, 제주은행
  - 10.31일 시행은행 : 총 10개 은행
    -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국민은행, 수협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
  - 11.28일 시행은행: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
  - ※ 2금융권(보험, 여전, 저축은행, 상호금융)과 대부업권(상위20개사)은 12월중 시행 예정



 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<sup>\*\*</sup>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관련 부대비용 없음